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현장기술활동 지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 계룡시

내 용

충청남도 계룡시 ○○○○센터에서는 ○○○○협동심의회 활동지원으로 농업기술 개발보급 촉진과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‘2017년 ○○기술활동 지원사업’을 추진하였다.

「2017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르면 ‘현장기술활동 지원사업’ 추진요령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.

1. 도·시군 ○○○○협동심의회 운영

- 시군 ○○○○협동심의회 : 136개소
 - 시군 ○○○○협동심의회 운영, 관련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
- 예산편성 : 인건비, 여비, 일반운영비, 보상금 등(국외여비 불가)
 - ※ 심의회운영이 행정으로 편입된 경우 시범사업 기술지원을 위한 활력화 지원사업 운영 등

2. 도·시군 ○○기술지도활동지원

- 도원·시군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등 시범사업 기술 지원, 상담보조원 활용 등
- 지도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선발하여 시군센터에 배치 활용
 - 지도공무원 전문연수(2년, 1년, 2개월) 교육생의 대체인력으로 활용
 - 신규지도인력의 멘토로서 직무 능력과 개인적 성장 지원
 - 농업인 상담을 통해 시급한 농업인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고 신규자에게 상담 지도 모델 제시
 - 현장연구과제 참여로 연구 품질 관리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년 ○○기술활동 지원(사업비 7,400천원)을 추진 하면서 같은 지침의 추진요령에는 맞지 않는 시설비로 4,500천원을 편성하여 ○○○센터 세로형 입간판 설치 및 주차장 스톱퍼 설치공사로 3,595천원을 집행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계룡시장은

[주의] 농촌지도 국고보조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편성을 하고,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